

공인탐정 인력의 교육훈련 전문화방안에 관한 연구

조 용 철 *

차 례	
I. 서 론	IV. 공인탐정제도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모델
II.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공인탐정 인력의 전문화방안	

I. 서 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인탐정제도는 시큐리티산업의 ‘뜨거운 감자’이자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민간경비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제도가 보험사건·교통사고조사, 미아·실종자추적, 기업정보보호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이 예상되지만, 실제로 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형사사법상 법리적 한계를 지닌 위험한 ‘양날의 칼’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조사업법(안) 발의로 대표되는 공인탐정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정착단계에서도 정부당국 및 민간경비업계의 꾸준한 노력과 법·제도적 개선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사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그동안 소위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로 대변되는 불법서비스업체들의 폐해이다. 공인탐정 관련법안의 정비를 계기로, 합법의 가면을 쓰고 우리 일상생활 곁으로 다가와 우월적 권한의 남용이나 공판과정에서의 개입행위가 만연될까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불법서비스업체는 그동안 불륜관계조사, 신상정보유출, 불법도청, 불법채권추심업무 등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도맡아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빈번히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는 이러한 불법서비스업체로 낙인 찍혀 있던 업체들에서 활동하던 인력들이 과연 외국과 같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서비스 공급자인 공인탐정 인력들에게는 첨단장비의 사용과 관련 법률지식의 구비 문제로, 서비스 소비자인 고객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의 문제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우려는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꾸준히 극복해야할 과제이지만, 근본적으로 공인탐정제도 하에서 활동하게 될 업체 및 인력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시큐리티업계 바탕에 깔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거 불법서비스업체에서 활동했던 상당수의 인력들이 전문자격이나 훈련된 우수자원으로서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입견은 당연한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결국 공인탐정제도의 도입과 함께 시큐리티업계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씻어내고 앞으로 제도개선의 노력에 앞장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인탐정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우수한 자원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민간경비산업 발전에 있어서 공경비섹터의 민영화(Privatization)¹⁾ 추세의 상징적인

1) 1980년대 이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기능의 효율성 증대의 일환으로 '법집행기관의 권한분산 및 부담해소' 방안이 꾸준히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것인 민간섹터로 이전 및 민간사법(Private Justice)의

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큐리티업계의 활동 및 관련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인탐정 인력의 전문화방안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임에 분명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공인탐정 인력의 전문화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공인탐정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공인탐정제도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시행하게될 민간조사업법(안)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찰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등장이다(Clifford E. Simonsen, Private Security in America, N.J.: Prentice Hall, 1998, pp.63-64).

II. 이론적 배경

1. 공인탐정의 업무범위

현재 논의되어 있는 공인탐정제도 관련 법안은 이상배 의원과 최재천 의원이 국회에 발의해 놓은 ‘민간조사업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에서는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다.

<표 1>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

이상배 의원(안)	최재천 의원(안)
제3조(업무)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확인 3. 화재·사고·손실·명예훼손의 원인과 책임의 조사 4. 사람의 사망·상해 및 물건의 손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조사 5. 소재가 불명한 친족의 소재파악 등과 관련된 조사 6.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의 확보 7. 개인에 관한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제3조 (업무)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 회계부정 등 각종 범죄 및 위법행위의 조사 2.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 각종 사고의 원인 및 책임의 조사 3. 분실·도난·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4.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 탐지 5.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 자료의 확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사

이 법안을 비교해보면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범죄 및 사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이를 통한 법원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이다. 이러한 사안은 ① 사이버범죄, 보험범죄, 지적재산권침해, 기업회계부정 등과 같은 위법행위와 ② 사람의 사망·상해, 화재, 교통사고, 물건의 멸실·훼손 등과 같은 각종사고로 다시 구분된다. 즉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가 민간조사업의 주된 활동이 되는 셈이다.

두 번째는 ① 분실·도난·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등과 같은 물품을 찾는 업무와 ② 행방불명자, 상속인, 소유불명재산의 소유자, 국내외 도피사범 등 특정인에 대한 소재탐

지 업무이다. 이 업무는 소재과악 대상이 물품인지 사람인지에 따라 다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활동해야만 법원 등에 사용될 증거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민간조사업자 및 민간조사원에게는 숙련된 법률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2. 공인탐정의 자격

앞서 살펴본 ‘민간조사업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조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표 2> 민간조사원의 자격

이상배 의원(안)	최재천 의원(안)
제6조(민간조사원 자격시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1.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군인 또는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업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감정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형법학·범죄학·법과학·경찰학·범죄학·소방학·안전관리학에 상당하는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분야에서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4. 제18조에 규정된 업무보조원으로서 종사경력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인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민간조사원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민간조사원 자격시험)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검찰청직원,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원, 국가정보원직원 및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정보 수집 및 수사직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경찰학·범죄학·형사법학·경호경비학·안전관리학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강의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3. 제3조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한 민간업체에서 조사 등의 업무 취급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3항 각 호 중 2이상의 분야에서 근무한 자는 그 기간을 통산하여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⑤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필기)과 제2차 시험(실무) 및 제3차 시험(연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안을 비교해보면 민간조사원의 응시자격 또는 1차시험 면제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검찰, 경찰 등의 사법경찰관리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업무에 5~7년 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대학에서 경찰학 등의 분야 석사이상 이수하고 연구경력이 5~10년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민간조사업무(보조원)를 5~7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제2차시험·제3차시험을 거쳐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본 법이 제정되지 않은 관계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정부당국과 학계에서 논의중이다.

민간조사원의 자격만을 놓고 보면, 경비지도사 또는 특수경비원에 비하여 자격요건이나 시험과정이 엄격한 것을 알 수 있다.²⁾ 다시 말하면 공인탐정제도는 어떠한 기존의 민간경비 인력보다도 우수한 시큐리티자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외국의 공인탐정 교육훈련

1) 미 국

최근 보도에 따르면 LA警察局(LAPD)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사설탐정(Private Investigator) 면허를 취득하여 부업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내부조사 및 市 당국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³⁾

미국에서는 경찰관신분의 야간경비원(Police Moonlighting) 뿐만 아니라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집행기관 요원이 상당수 있으며, 일반 개인의 경우 사설탐정 교육기관을 통하여 연수와 자격시험을 거쳐 州정부로부터 사설탐정 자격을 획득하고 있다.

2)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지도사 또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만을 규정해 놓았을 뿐이고, 시험과정 역시 제1차시험·제2차시험(경비업법시행령 제12조)으로 간소화되어 있다.

3) LA에서는 경찰관이 경찰관 윤리현장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무의 시간에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유흥업소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된다.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외국경찰 동향).

<표 3> 미국 사설탐정교육기관의 교과과정

학 기	교 과 목	학 점	시 간
1학기	사 설 탐 정 개 론	3	40
	감 시 추 적 기 법	3	60
	응 용 시 큐 리 티 I	3	80
	심 문 조 사 기 법	3	80
	심 리 학 개 론	3	100
2학기	조 사 실 무 I	3	80
	특 수 업 무 론	3	80
	민 간 조 사 론	3	70
	통 신 장 비 론	3	100
	사 회 학 개 론	3	100
3학기	고 소 사 건 조 사	3	80
	조 사 실 무 II	3	80
	응 용 시 큐 리 티 II	3	80
	시 큐 리 티 산 업 론	3	80
	심 리 학	3	100
4학기	비 밀 조 사 론	3	60
	증 거 사 법 절 차	3	80
	응 용 시 큐 리 티 III	3	80
	조 사 실 무 III	3	70
	사 회 학	3	100
총4학기	20 과 목	12	260

* 자료 : <http://www.lioninvestigationacademy.com/Default.aspx?tabid=27>.

실례로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사설탐정교육기관은 전문대학 과정에 준하는 2년간(4학기) 1600시간의 연수교육을 통하여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을 거쳐 탐정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개발되어 나오는 최신장비의 사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보수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호 주

호주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보험회사의 조사요원 및 법률자문법인의 증거조사원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민간영리업체의 조사활동에 사설탐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자격을 호주 내 각 州정부의 검정과 교육을 통하여 인증받고 있다.

현재 호주의 시큐리티산업은 경비(Guarding), 출입경비(Access Security), 사설탐정(Investigative Services), 시큐리티분석 또는 위험평가 (Security analysis or risk assessment), 시큐리티사업관리(Security business management)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⁴⁾

이러한 호주의 시큐리티인력의 자격검정제도는 등록된 훈련조직의 교육훈련시간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Western Australia의 사설탐정 부분에서는 사설탐정 2급은 142시간을, 사설탐정 3급은 302-322시간(최소302시간)을, 사설탐정 4급은 622-642시간(최소 622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표 4> 호주 시큐리티인력 훈련시간

구 분	자 격 구 분	시 간
사설 탐정	사설 탐정 2급	142
	사설 탐정 3급	302-642
	사설 탐정 4급	622-642
시큐리티 (위기 관리)	시큐리티 4급(위기 관리)	450
	시큐리티 디플로마(Risk Management)	770-830
	시큐리티 Advanced Diploma(위기 관리)	1030-1130

* 자료: Asset Security Training Package Implementation Kit의 Qualification요약

3) 일 본

일본은 그동안 사설탐정제도에 관한 명확한 법규범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4) 이상원,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7호, 2006, pp. 12-13.

사설탐정 및 흥신소의 공갈·도청 등 불법행위에 따른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탐정제도는 공인된 자격이나 면허제도 없이 일반서비스업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업법의 규제대상에만 해당되는 서비스산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정부에서는 사설탐정업자들이 고객의 약점을 이용하는 공갈 및 불법도청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탐정업무의 적정화 및 계약자보호를 위해 『탐정업의 업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 하였다.⁵⁾

이 법에는 ① 탐정업자의 영업소 단위 관할 공안위원회 신고의무화 ② 탐정계약시 영업소 명칭·의뢰업무 내용 등 명시 의무화 및 법령준수·비밀유지 의무화 ③ 탐정업무 제3자 위탁금지 등이 포함되었다.

東京都 千代田區에 위치한 일본조사업협회⁶⁾는 일본 전역에 23개지부 600여개의 회원사를 등록해놓은 거대 민간조직으로 국가공안위원회(내각총리대신 所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다. 이 단체 및 소속된 회원사들은 최근 정비된 탐정관련법안의 규정에 따라 민법상 법인의 감독의무⁷⁾ 외에도 불법행위금지 등의 업무 적정화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표 5> 일본 탐정업법의 개요

구 분	내 용
신 고 제	효과적인 단속과 규제를 위한 신고제 도입
결격사유	탐정업무로부터 폭력단원 등의 배제
업무의 적정화	기본원칙의 명확한 규정으로 불법행위금지, 비밀엄수의무 규정의 명확화
계약의 적정화	중요사항의 설명, 조사결과 취급방법의 규정 명확화.
교육 및 감독	소속종사원 교육, 감독 등의 규정 제정.
벌 칙	필요한 벌칙 제정.

* 자료 : 강영숙, 일본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006, p. 348.

5)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외국경찰 동향).

6) 日本調査業協會 홈페이지 <http://www.nittyokyo.or.jp/index.htm>.

7) 日本 民法 第六七條(法人の業務の監督), 民法 第七一條(設立許可の取消).

Ⅲ. 공인탐정 인력의 전문화방안

1. 법·제도적 토대 구축

1) 자격검정시험제도

공인탐정 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엄격한 자격검정시험의 제도마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불법서비스를 제공해왔던 홍신소나 심부름센터의 인력들이 새로 마련된 공인탐정 자격제도를 악용하여 합법적인 ‘위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엄격한 자격검정시험의 실시이다.

우선 현재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 사람을 ① 검찰, 경찰 등의 사법경찰관리로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업무에 5~7년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대학에서 경찰학 등의 분야 석사이상 이수하고 연구경력이 5~10년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자격 경력기간을 각각 7년, 10년으로 규정하여 최대한 많은 경험과 업무윤리를 갖춘 적격자만이 공인탐정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법안에서 민간조사업무(보조원)를 5~7년이상 종사한 사람도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자격 경력기간 또한 최소 7년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자격검정시험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자격검정시험 과목으로는 미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1차과목으로 범죄학(심리학, 사회학 포함)과 민간조사법(경비업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포함) 시험을 실시하여 기본소양과 법률지식을 확인하고, 2차과목으로 과학수사론(증거감식, 교통사고조사, 법의학, 미세증거물, 화재감정, Polygraph 포함), 특수범죄론(사이버범죄, 보험범죄, 금융회계범죄, 산업정보), 민간조사실무(조사기법, 조사장비, 업무윤리, 형사증거법 포함) 시험을 실시하여 공인탐정으로서의 자질과 배경지식을 검정하는 방안이 추천할 만하다.

2) 교육훈련제도

현행 신입 일반경비원, 경비지도사, 특수경비원의 기본교육은 각각 28시간, 44시간, 8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⁸⁾ 따라서 공인탐정의 기본교육시간도 우리의 실정과 호주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최소 80시간 이상 최대 140시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탐정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 개발과 교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제반 여건을 비추어보았을 때, 자격시험 검정과목이었던 ① 법률 및 기본소양과목 20~30시간 ② 과학수사론 및 특수범죄론과 같은 직무적성과목 40~70시간 ③ 실습 및 훈련 20~40시간 교육이 요구되며, 이 외에 ④ 입교, 평가, 수료 등의 시간을 합하여 기본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제1차·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을 마친 후 교육생의 10%를 3차시험에서 탈락시켜 기본교육과정의 충실도를 향상시키고 일정수준 이상의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⁹⁾

3) 사후관리계획

현재 국제공인자격증의 경우 대부분 자격취득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수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의 자질향상과 최신법령의 소개 기회로 삼고 있다.¹⁰⁾ 공인탐정제도로 이에 부응하여 기본교육을 수료하여 제3차시험에 합격한 민간조사원에게 2년에 한번씩 20시간 내외의 보수교육 의무를 법제화함으로써 공인탐정 인력의 질적 향상과 신중 장비 및 법령의 소개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천할 만하다.

이를 위하여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정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가 요구된다.

또한 제도 정착단계인 법령시행 초기에는 자격회원들에게 자격취소의 현황과 사례를

8) 경비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12조, 제15조.

9) 최근 공무원시험의 면접에서는 필기 합격자의 약 10~25%정도를 걸러내는 추세이며, 공무원교육기관의 입교 후 미수료율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신문 2006년 11월 2일자.

10) 금융관련 전문자격증(CFP, AICPA)의 경우 학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FP협회 홈페이지 <http://www.fpkorea.com>. 참조

우편물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자격회원들의 불법 서비스제공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전문 인력 양성프로그램

1) 우수교원 및 교재의 개발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업종은 그 조사기법이나 법률적 토대 면에서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교수 및 박사급의 우수교원을 확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우수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 팀의 구성이 시급하다.

또한 자격검정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수사론 및 특수범죄론 과목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경찰수사보안연구소·국립방재교육연구원 등의 공공기관과 대한손해보험협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금융감독원·민간 사이버보안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수교관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복잡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강의기법을 시험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도 요구된다.

2) 교육실습시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인탐정 인력을 전문적으로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시설이 부재한 상태이다. 일찍부터 사설탐정제도가 발달해온 미국·영국·호주 등의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의 경우도 일본조사업협회 산하 전문교육기관이 지정되어 민간조사 인력이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전국 대학 내에 과학수사론 및 민간조사실무 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실험실·강의교원이 확보된 교육기관을 경찰청 위탁기관으로 지정해놓고, 장기적으로 ‘시큐리티 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각종 경비원 교육 및 전문적인 시큐리티 인력양성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우수인력 확보방안

21세기에 들면서 각국에서는 시큐리티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전국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준강화 경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¹¹⁾

따라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준강화와 함께 근무환경, 보수체계 등 이들 전문 인력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공인탐정서비스에 투입함에 따라 의뢰자는 더욱 높은 품질의 탐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높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고비용 지불의사가 다시 직접적으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정책으로 재투자될 수 있을 것이다.¹²⁾

3. 장기적 발전방안

1) 산-학-경 협력구축

현재 공안탐정과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는 사실상 민간경비업계나 관련 시큐리티 학계의 중추적인 활동보다는 정치권과 경찰 등 관계당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와 그동안 홍신소·심부름센터 등을 통한 불법서비스의 만연으로 인한 시큐리티업계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현재의 법·제도의 정비과정에는 핵심적인 역할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중심에서 규정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의 토론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산-학-경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관련법률의 정비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11) 이상원,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7호, 2006, pp. 20.

12) Arthur J. Bilek, Private Security, Cincinnati: Anderson Pub., 1977, p. 13.

2) 대학 및 연구소의 설립

장기적으로 대학에 시큐리티학과와 개설을 통하여 민간경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 교원의 공급배출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 시큐리티 관련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확인되고 있는 이 때, 앞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우수한 시큐리티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 시큐리티 관련학과의 개설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함께 시큐리티 관련 학회 및 연구소의 설립을 통하여 외국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증대시키고, 관련 장비개발 및 법령보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민간사법제도 마련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민간사법(Private Justice)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61년대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거하여¹³⁾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만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공식화되어, 이후 경찰의 수사활동을 포함한 사설탐정의 조사활동이 합법적 증거획득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합법적 제도화의 추세는 역으로 사설탐정의 조사활동을 기초로 민간사법의 실현가능성을 꾸준히 제기시켰고, 1990년대부터는 기업보안유지 및 이미지 훼손방지를 위한 민간기업 내의 민간사법제도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다.¹⁴⁾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사회를 맞이한 우리사회에서도 비공식적인 민간사법의 차원이 아닌 공식적인 민간사법 관련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13) Mapp v. Ohio 판결 (367 U.S. 643(1961)).

14) James S. Kakalik & Sorrel Wildhorn, The Private Police, N. Y.: Crane Russak, 1997, pp. 252-254.

IV. 공인탐정제도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모델

1. 자격검정시험 모델

<표 6> 공인탐정 자격검정시험

	내 용
1. 시험시기	1년에 1회(6월중 실시)
2. 시험자격	① 검찰청직원,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원, 국가정보원직원 및 형사소송법상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정보 수집 및 수사직무의 경력이 통산하여 7년 이상인 자 ② 대학에서 경찰학·범죄학·형사법학·경호경비학·안전관리학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강의경력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③ 제3조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한 민간업체에서 조사 등의 업무 취급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시험과목	① 1차과목 : 범죄학(심리학, 사회학 포함), 민간조사법(경비업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포함) ② 2차과목 : 과학수사론(증거감식, 교통사고조사, 법의학, 미세증거물, 화재감정, Polygraph 포함), 특수범죄론(사이버범죄, 보험범죄, 금융회계범죄, 산업정보), 민간조사실무(조사기법, 조사장비, 업무윤리, 형사증거법 포함)
4. 합격기준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5. 선발인원	440명 내외
6. 기 타	제1차·제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을 마친 후 교육생의 10%를 제3차시험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공인탐정 자격검정시험제도를 정리하면 위와 같은 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자격검정시험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해당분야의 7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이미 현장업무와 이론에 숙련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필기시험은 현행 경비지도사 검정방법과 유사하게 진행하되, 1차과목으로 범죄학(심리학, 사회학 포함), 민간조사법(경비업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포함)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소양과 배경지식을 갖춘 우수인재를 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2차과목에서는 과학수사론(증거감식, 교통사고조사, 법의학, 미세증거물, 화재감정, Polygraph 포함), 특수범죄론(사이버범죄, 보험범죄, 금융회계범죄, 산업정보), 민간조사실무(조사기법, 조사장비, 업무윤리, 형사증거법 포함) 과목을 선정함으로써 자격검정시험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기본교육 모델

범죄학과목의 경우 미국의 사설탐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심리학과 사회학 관련내용을 심도있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법률과목의 경우, 민간조사법 외에도 경비업법·신용보호관련법률·정보보호관련법률·민법 등의 교육을 통하여 제반 법적 환경을 이해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해야 할 것이다.

과학수사론과 특수범죄론 과목의 경우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의 질적 향상과 최신 기술의 소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공인탐정 교육훈련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7> 공인탐정 기본교육 모델

구 분	교 육 과 목	시 간	비 고
범 죄 학	심 리 학	4	
	사 회 학	4	
관 련 법	민간조사법	4	
	경 비 업 법	2	
	신용보호관련법률	2	
	정보보호관련법률	2	
	민 법	2	
과학수사론	증거감식론	4	실습 포함
	교통사고조사론	4	"
	법 의 학	4	"
	미세증거론	4	"
	화 재 감 정	4	"
	Polygraph	4	"
특수범죄론	사이버범죄	6	
	보 험 범 죄	6	
	금 융 범 죄	6	
	회 계 범 죄	6	
	산업정보보호	6	
	실종자조사	6	
	실종물품조사	6	
민간조사실무	조 사 기 법	6	실습 포함
	조 사 장 비	6	"
	업 무 윤 리	2	
	호 신 술	6	실습 포함
공통과정	입교, 평가, 수료	4	
24 과 목		0	

3. 보수교육프로그램

보수교육프로그램은 최신 관련법률을 안내하고 새로 나온 민간조사 관련장비 소개 및 실습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개정·보완되고 있는 신용보호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환경을 교육을 통해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최신감식기법 및 최신조사실무과정을 통하여 보수교육을 새로운 시큐리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공인탐정 보수훈련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8> 공인탐정 보수교육프로그램 모델

구 분	교 육 과 목	시 간	비 고
관 련 법 률	민간조사법	1	
	신용보호관련법률	1	
	정보보호관련법률	1	
	민 법	1	
과학수사론	최신감식기법	4	실습 포함
특수범죄론	정보통신범죄	3	
	금융보험범죄	3	
민간조사실무	최신조사실무	4	실습 포함
공 통 과 정	입교, 평가, 수료	2	
8 과 목		0	

※ 2년 기간 내에 20시간 보수교육 의무 (사이버강의 10시간 가능)

V. 결 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탐정제도와 함은 소위 興信所와 심부름센터를 통한 불륜관계조사, 불법채권추심업무 등과 같은 위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선입견이 우리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 데에는 민간조사활동이 전문자격이나 훈련된 우수인력으로 검증받지 못했던 지난 시절의 한계에서 그 과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기본 142시간에서 길게는 2년간의 연수기간을 거쳐야만, 검정시험을 통하여 사립탐정 자격이 인증되는 州정부 면허제도를 실시해왔다. 일본도 최근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조사업무의 불법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민간조사법(안)’이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탐정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현행 규정하고 있는 민간조사의원의 업무범위와 자격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한 자격검정시험제도 및 교육훈련제도를 시행하는 등 법·제도적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공인자격증제도와 같이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 함양과 신종기법 소개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교원 및 교재의 개발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시큐리티 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우수한 인력을 꾸준히 배출해낼 수 있는 사회안전관리망 구축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산-학-경 협력구축을 앞으로 공인탐정제도 관련법률 정비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협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발족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공인탐정제도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모델 개발 등의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신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되고, 또 가장 위엄을 갖춘 神이기도 한 야누스(Janus)¹⁵⁾는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두 얼굴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집을 보호하

기 위해서, 특히 건물의 출입문을 지키기 위해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부디 앞으로 도입될 공인탐정제도가 겉과 속이 다른 야누스의 모습이 아닌, 개인과 가정의 평화와 이웃의 안녕을 모두 지켜줄 수 있는 우리사회의 든든한 출입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5) 하나의 얼굴은 들어오는 사람은 검문하고, 다른 얼굴은 집을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야누스는 집안의 안전과 도로의 보호를 책임지고 있었던 神이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영숙, 일본탐정업계의 실태와 탐정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8호, 2006, p. 348.
- 이상원, 일반경비원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7호, 2006, pp. 12-13.
- 이상원, 호주의 민간경비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7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4, p. 112.
- 이윤근 외, 민간경비론, 도서출판 엑스퍼트, 2006, pp. 350-354.

2. 외국문헌

- Arthur J. Bilek, Private Security, Cincinnati: Anderson Pub., 1977, p. 13.
- Clifford E. Simonsen, Private Security in America, N.J.: Prentice Hall, 1998, pp. 63-64.
- James S. Kakalik & Sorrel Wildhorn, The Private Police, N. Y.: Crane Russak, 1997, pp. 252-254.

3. 기 타

경비업법

경비업법시행령

경비업법시행규칙

서울신문 2006년 11월 2일자.

<http://www.lioninvestigationacademy.com/Default.aspx?tabid=27>.

<http://www.fpkorea.com>.

<http://www.police.go.kr>.

<http://www.nittyokyo.or.jp/index.htm>.

日本 民法典